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등기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 안 제34조)

나. 의료기술협력단 수입 및 보상금 지급 범위 신설

(안 제35조, 안 제36조)

다. 의료기술협력단 지출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라. 의료기술협력단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제45조로 하고,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등기)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
2.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제3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법 제28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술협

력단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중심병원 내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3. 산병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산병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소속 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 관리
5. 그 밖에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부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제36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과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장이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37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법 제28조의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8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34조 각 호의 업무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산병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한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42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한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

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 등 기)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성명과 주소</u> <u>5. 공고의 방법</u> <u>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 <u>1.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규정 사본</u> <u>2.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u> <u>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u>
<u><신 설></u>	<u>제3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u> <u>법 제28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신 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중심병원 내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3. 산병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산병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소속 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5. 그 밖에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부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

<신 설>

<신 설>

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
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의료
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제36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
8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
기술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
한 직원과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
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
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
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장
이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37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법 제28조의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신 설>

<신 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8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34조 각 호의 업무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산병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신 설>

<신 설>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연구중심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한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42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

<u><신 설></u> <u>제33조 (생 략)</u>	<u>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 여야 한다.</u> <u>제44조(감사)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한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내 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u> <u>제45조 (현행 제33조와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905